

임시이사회 회의록

■ 법인 임시이사회 회의(진행: 이형 이사)

1. 일 시 : 2013. 12. 20(금) 17:00~

2. 장 소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

3. 참석자 : 총 9명(이사6명, 감사1명, 자문위원2명)

4. 회의순서 및 내용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회순채택

○ 이사장 인사

○ 전차 회의록 낭독

○ 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 2013년도 추가경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 제2호 의안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 기타의안

○ 폐회

가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515 - 82 - 04858

포항시 북구 칠성로 47번길 4 선재빌딩

이사장 김지찬

054 - 247 - 6355

의 정 사 항

○ 성원보고

총 8명의 이사 중 참석 6명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었기에 이사회 개최 성원이 구성됨.

○ 개최 / 회순채택

지금부터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임시이사회를 개최함. 아울러 회의 회순을 이사들 전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채택함.

○ 이사장 인사(의장) / 의안채택

의장(김지찬(난승스님) 이사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2013년 추가경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감사전임의 건,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함. 의안 심의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제1,2,3,4호 의안을 채택함.

○ 전차회의록 낭독

이형 이사가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모든 이사들이 이에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음을 전달하여 김명조상임이사와 박기흠 이사가 전차회의록에 서명 날인함.

○ 의안심의

※ 제1호 의안 : 2013년도 추가경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 이형 이사 : 본 사안은 먼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법인 및 산하시설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전체적인 사업진행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함.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큰 변화는 없고 자활센터나 시니어클럽의 경우 인센티브 관련하여 증액이 있음을 설명함.

- 김명조상임이사 : 정애원의 예산 감소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원함.

- 이형 이사 : 작년대비하여 입소 인원의 확충이 미비하였고 입소 어르신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입소자부담금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인력에 대한 지출도 줄었기 때문에 3억원 가량의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잘 맞추어져

있음을 설명함.

- 정병학 이사 : 자활센터나 시니어클럽에서 기관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좋은 소식을 들어 기분이 좋고, 인센티브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원함.

- 이형 이사 : 기관별 기준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이나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평가회 지원 등에 쓰이고 있음을 설명함.

- 박기흠 이사 : 직원들의 사기함량을 위해 장기적인 차원으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램.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수정하거나 재검토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석이사 전원 박수로서 원안대로 통과됨.

※ 제2호 의안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 이형 이사 : 본 사안은 먼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법인 및 산하시설의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함. 전반적인 예산은 3억 7천만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정애원 장비보강, 선재원 소방설비 등 기능보강사업 등이 완료되었고 산하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설명함.

- 의장(김지찬(난승스님) 이사장) :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안)는 내년 정기총회 때 확정된 안으로 의안심의 해야 함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물음.

- 김명조상임이사 : 미확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며, 2014년에도 법인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 예산에 특별히 보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제 2호 의안에 대해 김명조 상임이사의 동의와 함께 박기흠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박수와 함께 결의함.

※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 의장(김지찬(난승스님) 이사장) : 현재 법인이사회와 관련하여 감사들의 임기가 2년이 다되어가 이와 관련하여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함.

- 이형 이사 : 열린가람 법인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흥년 감사와 이보현 감사의

경우 2년이란 시간동안 법인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법인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하였음. 이에 두 분 모두 연임하고자 함.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비고
김홍년	감사	660908-1781710	감사 연임 2014.1.1~2015.12.31 (2년)
이보현	감사	540320-1703211	감사 연임 2014.1.1~2015.12.31 (2년)

- 김명조 상임이사 : 그간 두 감사의 헌신에 감사하며, 김홍년·이보현 감사의 연임에 흔쾌히 동의함.

- 참석이사 전원 박수로서 원안대로 통과됨.

※ 제4호 의안 :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의 건

- 이형 이사 : 지난 10월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의해 실시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점검 결과 현재 사용중인 운영규정의 취업규칙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는 임신부의 보호, 태아검진시간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시정하고자 나누어드린 개정안에 따라 수정을 원함.

- 김명조상임이사 : 운영규정이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고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한 개정이라 사료됨으로 수정을 권함.

- 정병학 이사 : 여성종사자가 많은 사회복지사업 분야의 특성상 법인 내 많은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고 앞으로 법인의 발전과 이미지 상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 제4호 의안에 대해 정병학 이사의 동의와 함께 김명조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박수와 함께 결의함.

※ 기타의안

- 이형 이사 : 현 법인 산하시설별 직원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위해 인사이동 및 법인직 전환이 필요하여 먼저 배부된 유인물의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인사변동사항의 내용대로 결정함을 설명함.

- 김명조상임이사 : 기관장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을거라 생각 되고 향후 법인 조직과 사업 발전에 효율성과 책임감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램.

- 참석이사 전원 박수로서 원안대로 통과됨.

○ 폐회

- 의장(김지찬(난승스님) 이사장) : 금일 2013년 12월 20일 법인 임시이사회를 마무리 하며 열린가람을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여러 이사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함. 연임에 동의해준 김홍년·이보현 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며 이사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2013년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함.

【 결 의 사 항 】

1. 2013년도 추가경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아래 및 별첨과 같이 승인 가결함.

구 분		2013 1차추경 (A)	2013 2차추경 (B)	증감(B-A)	
				액수	비율(%)
합 계		8,247,489	8,313,321	65,833	17
법인	소 계	892,719	904,419	11,700	1
	법인	892,719	904,419	11,700	1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소 계	2,225,364	1,917,166	-308,198	-14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2,225,364	1,917,166	-308,198	-14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소 계	1,013,197	1,099,102	85,905	8
	학산종합사회복지관	1,013,197	1,099,102	85,905	8
포항지역자활센터	소 계	2,457,977	2,703,300	245,323	10
	포항지역자활센터	2,457,977	2,703,300	245,323	10
	포항청소년자활지원관	-	-	-	-
포항시니어클럽	소 계	309,599	324,702	15,103	5
	포항시니어클럽	309,599	324,702	15,103	5
노인요양시설 선재원	소 계	477,958	461,663	-16,295	-3
	노인요양시설 선재원	477,958	481,663	-16,295	-3
선재재가노인지원센터	소 계	346,904	370,938	24,034	7
	선재재가노인지원센터	346,904	370,938	24,034	7
가람재가노인지원센터	소 계	306,228	314,489	8,261	3
	가람재가노인지원센터	306,228	314,489	8,261	3
학산어린이집	소 계	217,542	217,542	-	-
	학산어린이집	217,542	217,542	-	-

2.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아래 및 별첨과 같이 승인 가결함.

구 분		2013 2차추경 (A)	2014 예산 (B)	증감(B-A)	
				액수	비율(%)
합 계		8,313,321	7,941,106	-373,475	-4
법인	소 계	904,419	730,370	-174,049	-19
	법인	904,419	730,370	-174,049	-19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소 계	1,917,166	2,212,859	295,693	15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1,917,166	2,212,859	295,693	15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소 계	1,099,102	919,059	-180,043	-16
	학산종합사회복지관	1,099,102	919,059	-180,043	-16
포항지역자활센터	소 계	2,703,300	2,298,615	-404,685	-15
	포항지역자활센터	2,703,300	2,298,615	-404,685	-15
	포항청소년자활지원관	-	-	-	-
포항시니어클럽	소 계	324,702	312,992	-11,710	-4
	포항시니어클럽	324,702	312,992	-11,710	-4
노인요양시설 선재원	소 계	461,663	527,679	66,016	14
	노인요양시설 선재원	461,663	527,679	66,016	14
선재제가노인지원센터	소 계	370,938	394,060	23,122	6
	선재제가노인지원센터	370,938	394,060	23,122	6
가람제가노인지원센터	소 계	314,489	327,114	12,625	4
	가람제가노인지원센터	314,489	327,114	12,625	4
학산어린이집	소 계	217,542	218,358	816	-
	학산어린이집	217,542	218,358	816	-

3.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감사 선임의 건을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 함.

변경전(임기만료)			변경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김흥년	660908-1781710	감사 선임 2012.1.1~ 2013.12.31 (2년)	김흥년	660908-1781710	감사 선임 2014.1.1~ 2015.12.31 (2년)
이보현	540320-1703211	감사 신규선임 2012.1.1~ 2013.12.31 (2년)	이보현	540320-1703211	감사 선임 2014.1.1~ 2015.12.31 (2년)

4.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 함.

개정 전(구문)	개정 후(신문)	개정사유
<p>제27조(출산 휴가) ①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p>	<p>제2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p>	<p>표준취업규칙안 (2012.12) 반영하여 수정</p>
	<p>취업규칙 제3장 복무 제3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법인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법인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법인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p>	<p>표준취업규칙안 (2012.12) 반영하여 추가</p>

5.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인사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 함.
 가. 승진자 및 법인직 전환

순	현 재 사 항			임 용 내 용	
	현 근무처	직원명	직급	직급/직책	발령일
1	포항지역자활센터	권대근	5급(갑)	4급/센터장	2014.01.01
2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김유진	5급(을)	5급(갑)	2014.01.01
3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김윤지	기관직	6급갑	2014.01.01
4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배성희	기관직	6급갑	2014.01.01

나. 인사발령사항

순	현 재 사 항		발 령 사 항		
	현 근무처	직원명	발령근무처	직급/직책	발령일
5	포항지역자활센터	김경모	선재제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4급/센터장	2014.01.01
6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황영훈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5급(갑)/사무국장	2014.01.01
7	선재제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현진	가람제가노인지원센터	5급(을)/센터장	2014.01.01

2013 년 12 월 20 일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이 사 장 김 지 찬



이 사 김 명 조



이 사 박 기 흠



이 사 정 병 학



이 사 정 필 재



이 사 이 형

